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나. 용어 정비(안 제8조~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의회”를 각
각 “구미시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시”를 “구미시”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
회”를 “구미시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3) 및 이 조례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 금고”를 “구미시 금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의회”를 “구미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의회”를 “구미시의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제14조제1항 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내용
<p>가구별 지원사업</p>	<p>통신요금 등 지원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 생필품 등 지원사업 가전제품 지원사업</p>
<p>공동 지원사업</p>	<p>마을 공동시설 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자생단체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환경정비 지원사업 행사 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사업 부동산 임대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p>

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3.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실국장급 공무원 중 1명

2. 시의회 의원 2명

3. 4. (생략)

④ (생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 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략)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생략)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 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

-----.

1. 구미시-----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구미시-----

2. 구미시의회 --

3.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3) 및 이 조례 별표 3-----

의를 거친 사업

② ~ ⑤ (생략)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기금 결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미시 금고-----

-----.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 구미시의회-----
-----.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제18조(기금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의회-----
-----.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성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성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성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형 순
	팀 장	박 유 리
	담 당 자	박 현 정 (480-5232)